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전문의 법정 의무교육(정기교육) 조건부 인정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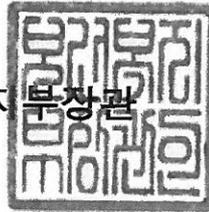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에 따라 3월 이후 실시 예정인 지도전문의 정기교육(공통교육, 학회교육)이 하반기로 연기되었고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정기교육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정기교육 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각 수련병원(기관)장은 소속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적정 시기에 이수하여 지도전문의 취소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정기교육 이수방법 및 조치
정기교육을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 (대면 교육 대상)	'20.9.30 이전까지 공통교육(온라인, 4시간)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우선 인정(정원책정 지도전문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책정 등에 불이익 없음)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을 '20년에 받아야 하는 지도전문의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대상)	→ 추후 학회교육(4시간)은 '20.12.31*까지 대면으로 이수 완료 필요조건, 미이수시 자격 취소 및 전공의 정원책정에 반영 예정 ※ 다만, 전공의 정원책정과 무관하게 '20.12월 말까지 정기교육만 받으면 되는 지도전문의의 경우 기존 방법대로 '20.12월말까지 공통교육 및 학회교육 이수

* 공통교육 및 학회교육의 이수기한 및 이수방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교육과정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 (참고) 전공의법 상 지도전문의 관련 조항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각 수련병원(기관)장

주무관 김서윤 보건사무관 임영실 의료자원정책과 전결 2020.5.20.
장 김현숙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5633 (2020.05.2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60 팩스번호 044-202-3925 / ksy1021@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2조(지도전문의의 지정)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일 것
2.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을 받았을 것
- ②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2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최초로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도전문의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12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또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기초교육
2. 지도전문의: 정기교육
-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교육 및 정기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지도전문의의 지정)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도전문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이름, 소속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에 따른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을 지도전문의로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교육(이하 "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끝낸 날

제3조의2(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제3조의3(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초교육

-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 1) 전공의에 대한 지도·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

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 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기초교육: 4시간

나. 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이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이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